

**Premium Report 제15호  
(2015. 9. 30)**

# 정보통신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에 대한 고찰



작성자 : 김정우 연구원

내용문의 : T - (031) 231-3434 / E - [kiw@kici.re.kr](mailto:kiw@kici.re.kr)

-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산출하는 공사원가는 재료비, 노무비, 경비의 순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
  - ▶ 재료비 : 직접 산출
  - ▶ 노무비 : 직접 산출(직접노무비), 비율 산출(간접노무비)
  - ▶ 경비 : 직접 산출(직접경비), 비율 산출(간접경비)
  - ▶ 일반관리비 : 비율 산출
  - ▶ 이윤 : 비율 산출
- 제비율이란 직접 산출이 불가능한 간접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비목별 적용 비율로서, 간접노무비율, 기타경비율, 일반관리비율, 이윤율 등을 말함
  - ▶ 간접노무비 : 직접노무비  $\times$  간접노무비율
  - ▶ 기타경비 : (재료비+노무비)  $\times$  기타경비율
  - ▶ 일반관리비 : (재료비+노무비+경비)  $\times$  일반관리비율
  - ▶ 이 윤 : (노무비+경비+일반관리비)  $\times$  이윤율
-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제비율을 분석해보고 현행 제비율 적용기준의 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

- 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9호 2015.3.1, 일부개정)
  - ▶ 간접노무비율 : 별도 기준 없으나 계산방법 명시
  - ▶ 기타경비율 : 별도 기준 없음
  - ▶ 일반관리비율 : 공사분야별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하되, 6%를 초과 계상할 수 없음(상한율 규정)
  - ▶ 이율율 : 15%를 초과 계상할 수 없음(상한율 규정)
-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(건축·산업환경설비, 2015.3.9 기준)
  - ▶ 간접노무비율 : 공사분야별/규모별/기간별로 별도 적용·발표(6.0%~9.6%)
  - ▶ 기타경비율 : 공사분야별/규모별/기간별로 별도 적용·발표(5.2%~7.4%)
  - ▶ 일반관리비율 : 공사규모에 따라 계약예규의 적용비율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, 상한율은 계약예규와 동일(최대 6%)
  - ▶ 이율율 : 계약예규의 상한율과 동일(최대 15%)하나 공사규모별(50억 미만 등)로 세분화하여 적용·발표

## 현행 제비율 적용기준의 문제점

- 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9호 2015.3.1, 일부개정)
  - ▶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1989년 제정된 이래 지속적인 개정 과정을 거쳤으나, 공사 규모 조정 이외에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급격하게 변동되고 있는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시의성을 상실함
-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등
  - ▶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(간접노무비율/기타경비율)이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(건강/연금/고용보험료율) 등은 대규모 건축, 토목 분야를 기준으로 발표·산정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의 특성(소규모, 단기간 등) 및 정보통신업계의 현실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

○ 목 적

- ▶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제비율 적용기준 수립 및 현행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과 비교·분석

○ 분석대상

- ▶ 2014년도 기준 정보통신공사 시공실적 318,183건 중 2,000만원 이상 공사의 개별 완성공사원가명세서 1,061건

○ 분석방법

- ▶ 개별 완성공사원가명세서 및 해당업체의 재무제표(손익계산서 등)를 활용하여 제비율 산출(공사규모별/기간별 구분에 따라 해당 표본들을 산술평균)

○ 분석의 한계

- ▶ 공사규모별/기간별에 구분에 따라 수집된 표본수 부족으로 특수한 몇몇 공사에 의해 원가구성 비율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

○ 분석결과

구 분		간접노무비	기타경비	일반관리비	이 윤
공사규모	공사기간	(직노)×율	(재+노)×율	(재+노+경)×율	(노+경+일)×율
5천만원 미만	6개월 이하	11.01%	12.47%	15.89%	10.35%
	7~12개월 이하	10.75%	16.18%		
	13개월 이상	-	-		
5천만원~ 1억원 미만	6개월 이하	10.64%	10.52%	14.08%	13.84%
	7~12개월 이하	10.22%	10.72%		
	13개월 이상	10.07%	18.80%		
1억원~ 3억원 미만	6개월 이하	10.38%	11.79%	14.54%	12.45%
	7~12개월 이하	10.27%	11.73%		
	13개월 이상	8.49%	9.64%		
3억원~ 5억원 미만	6개월 이하	12.41%	7.60%	14.69%	12.64%
	7~12개월 이하	9.24%	13.26%		
	13개월 이상	9.35%	8.53%		
5억원~ 10억원 미만	6개월 이하	10.07%	8.61%	13.56%	13.34%
	7~12개월 이하	12.87%	9.30%		
	13개월 이상	10.78%	15.74%		
10억원~ 30억원 미만	6개월 이하	-	-	13.61%	15.38%
	7~12개월 이하	9.76%	7.62%		
	13개월 이상	9.79%	7.76%		
30억원 이상	6개월 이하	-	-	12.85%	13.66%
	7~12개월	10.64%	14.76%		
	13개월 이상	10.34%	9.21%		

※ '5천만원 미만 13개월 이상 공사' 및 '10억원~30억원 미만/30억 이상 6개월 이하' 공사는 표본수 부족으로 통계값 제외

○ 현행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과 비교

- ▶ 정보통신부문의 간접노무비율은 현재 조달청(건축·산업설비)에서 별도로 적용·발표하고 있는 간접노무비율과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, 기타경비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
- ▶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상한율(6%)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관리비율의 경우, 차이가 가장 큰 비목으로서 모든 구간에서 약 7% 이상 높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됨
  - 즉, 현행 일반관리비율은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연간 실질적으로 발생하여 지출하고 있는 일반관리비에 비해서 매우 낮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
- ▶ 일반관리비율과 마찬가지로 상한율을 규정하고 있는 이윤율(15%)의 경우, 대부분의 구간에서 현행 이윤율을 상한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
  - 기타경비, 일반관리비 등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적용기준이 낮아 적정원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

- 정보통신부문 제비율을 분석한 결과, 기타경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이 현행 제비율 적용기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
  - ▶ 현행 조달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타경비율은 대규모 건축·산업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조달청 정보통신분야 제비율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
  - ▶ 현행 계약예규에서 상한율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관리비율은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고정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 공사 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(상한율 개정 등)이 선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
- 이를 위해서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등을 통해 제비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
- 또한 정보통신공사와 마찬가지로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전기공사나 소방공사 등 타 분야와의 제비율 개정 관련 업무공조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